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0. 12. 30(수) 10:20

제22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
(도시안전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 2. 도시안전국 명시이월 사업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0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 보조금	구비
합계 : 3개 부서 / 8건		16,857,000	15,043,809	4,974,191	183,361	9,886,257
도시계획과 (2건/269,618천원)	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	300,000	138,200	0	67,718	70,482
	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	360,000	131,418	0	65,643	65,775
건축과 (1건/50,000천원)	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	50,000	50,000	0	50,000	
공원녹지과 (5건/14,724,191천원)	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	1,387,000	574,191	574,191	0	
	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	9,750,000	9,750,000	0	0	9,750,000
	꾸러기·소망어린이공원 재조성	500,000	500,000	500,000	0	
	안양천 테마풍경길 조성	1,200,000	700,000	700,000	0	
	호암늘솔길 연장사업	3,310,000	3,200,000	3,200,000	0	

### 3. 검토의견

- 도시안전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부서 8건 150억 4,380만 9천원으로
  - 도시계획과는
    -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총 2건 2억 6,961만 8천원이 명시이월되며 해당 용역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1년도 10월 집행완료 예정으로 이월
  - 건축과는
    -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1건 5,000만원이 명시이월되며 시비 보조금의 11월 결정으로 연도 내 집행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
  - 공원녹지과는
    -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등 5건 147억 2,419만 1천원이 명시이월되며 특별교부금의 하반기 지급, 토지 매수협약 미체결로 연도 내 집행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함.
  
- 도시안전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0. 9. 10.] [법률 제17390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[전문개정 2011.8.4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8.4.]